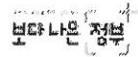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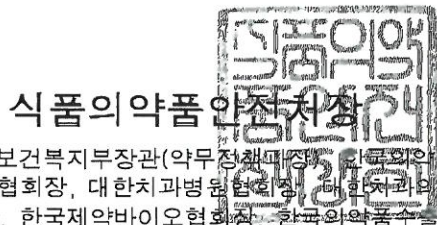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약사법」 일부개정(공포 '17.10.24, 시행 '18.10.25.)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민원 수수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수신자 국무조정실장(규제심사관리관),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대장),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약물수출입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주무관 이철승 연구관 김판순 의약품정책과 전결 2018.10.25.
장 김상봉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9181 (2018. 10. 2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35 팩스번호 043-719-2606 / pharm200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